

## 개성공단 국제화의 효과와 과제

이 해 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은 2006년 전체 생산의 약 26.8%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2년 말 현재 전체 생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이유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 북한산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제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FTA를 통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인정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EU, 미국 등 45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8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2012년 8월에는 터키, 콜롬비아와 각각 FTA 협상에 서명하였으며,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게 하는 '원산지 특례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 수출품의 경우 FTA에서 역외가공의 인정 여부에 따라 생산 물품의 관세상 대우가 달라져 그에 따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좌우된다. 미국, EU 등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별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표시될 경우, 북한은 WTO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경제제재 조치 차원에서 수입금지적 고율 관세를 부과받거나 일반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어 미국 시장 접근이 용이해지면 북한의 저임금 우수 노동력에도 투자를 주저하던 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 뿐 아니라 대기업 및 해외기업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개성공단 1단계의 성공적인 진전뿐 아니라 2단계에 대한 수출중심기지로의 개발계획도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체결 FT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FTA 체결시 협상 전략을 각각 수립해야 한다. 향후 FTA 체결 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가장 유리한 한-싱가포르 FTA의 ISI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체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OPZ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한-EU, 한-터키 FTA에 요르단과 이집트의 QIZ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개성공단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개혁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혁 의지 표명 유도 등이 필요하다.

## 개성공단 국제화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53,448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19.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12년 생산액은 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6.8% 증가하였다. 2012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생산액은 774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579 달러 이후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은 2006년 전체 생산의 약 26.8%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2년 말 현재 전체 생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주요 수출국은 호주(44.7%), EU(13.9%), 러시아(12.1%) 중동(9.7%), 중국(3.7%), 일본(2.4%) 순이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이유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 북한산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제고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FTA를 통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해외 판로 확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인정이 필수적이다. 주요 수출 목표 시장인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 접근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특례 인정 관련 규정 협의 진행 현황과 과제 및 한국산 원산지 인정시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 개성공단 제품의 생산 및 수출 추이 〉

(단위 : 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생 산 (A)	1,491	7,374	18,478	25,142	25,647	32,332	40,185	46,950	197,599
수 출 (B)	87	1,983	3,967	3,584	2,860	3,668	3,687	3,639	23,474
수출비중(B/A)	5.8%	26.8%	21.4%	14.3%	11.2%	11.3%	9.2%	7.8%	11.9%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각호 참조.

## FTA와 개성공단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EU, 미국 등 45개국과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8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2012년 8월에는 터키, 콜롬비아와 각각 FTA 협상에 서명하였으며,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추진 현황	해당 국가
FTA 발효	- ASEAN(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 EFTA(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 7개국), EU(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27개국),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등 45개국
FTA 서명/타결	- 터키, 콜롬비아 등 2개국
FTA 협상중	-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6개국),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중국 등 13개국
FTA 협상 준비/검토중	-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SACU(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5개국), 말레이시아, 몽골, 일본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원산지 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 효과를 규정하는 제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FTA로 인한 혜택의 실질적 수혜 여부는 원산지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외가 공이란 FTA 당사국 영역이 아닌 역외지역에서 생산, 가공한 제품에 원산지를 부

여하거나, 역내로부터 FTA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역내산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sup>6)</sup> 이는 다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이하 OP) 방식, 통합인정(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이하 ISI) 방식, 역외가공 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이하 OPZ 위원회)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P 방식은 FTA 일방당사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추가 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을 해당 당사국으로 재수입하여 FTA 타방 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 역외에서 가공, 제조된 후 재수입되어 타방 당사국에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역내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ISI 방식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당해 협정에 열거한 일정 품목의 제품에 대해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국에서 수출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역외가공은 OP 방식을 의미하나, ISI 방식이 OP 방식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OPZ 위원회 방식이란 당사국이 OPZ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게 하는 ‘원산지 특례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 국내 반입 제품의 경우, 2005년 3월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5-10호)에 따라 한국산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된다. 국내 투자분과 국내산 직접재료비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 한국산으로 표시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북한산(개성)으로 표시된다. 국외 수출품의 경우 FTA에서 역외가공의 인정 여부에 따라 생산 물품의 관세상 대우가 달라져 그에 따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좌우된다. 미국, EU 등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별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표시될 경우, 북한은 WTO 비회원국이기에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경제제재 조치 차원에서 수입금지적 고율 관세를 부과받거나 일반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6) 고준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 『안암법학』제28권, 안암법학회, 2009, p. 502.

## 개성공단 관련 FTA 규정

개성공단 관련 FTA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인정 유형은 ① ISI + OP 방식, ② OP 방식, ③ OPZ 위원회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 개성공단 착공 이전에 서명·발효되어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특례 규정이 없으나, 자유무역위원회에서 원산지 규정 변경이 가능하다.

### ① ISI + OP 방식 : 한-싱가포르 FTA의 적용 방식

한-싱가포르 FTA는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하는 규정을 최초로 도입한 FTA이다. HS 6단위 4,625개 품목에 대해서는 ISI 방식을, HS 10단위 134개 품목에 대해서는 OP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싱가포르는 이미 북한산 제품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② OP 방식 : 한-EFTA, 한-ASEAN,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와 한-인도 CEPA<sup>7)</sup> 등의 적용 방식

한-EFTA FTA는 상품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OP 기준과 HS 6단위 267개 품목에 대한 제한적 OP 기준을 적용한다. 원산지 특례규정의 개성을 공동위원회에 위임하고, 발효 후 3년 특례규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FTA는 HS 6단위 100개 품목에 대해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이고, 총 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산지 특례인정품목이 100개로 상당히 제한적이며, 발효 후 5년 경과 후 철회 가능하고, 특별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는 등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효과를 절감시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한-페루 FTA에는 개성공단이 명시되어 있으며, HS 6단위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투입된 부가가치가 4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설정하

7)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FTA와 유사

고 있다. 공동위원회를 통한 대상품목의 개정 또는 당사자 일방의 통지에 의한 적용 정지가 가능하고, 발효 후 5년 후에는 폐기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인도 CEPA는 개성공단이 명시되어 있으며, HS 6단위 108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투입된 부가가치가 40% 이하이고, 총 재료비 중 역내산 재료비가 6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동위원회에 의한 이행 및 운영 검토, 발효 5년 후 철회가 가능하며, 특별수입제한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콜롬비아 FTA에는 개성공단이 명시되어 있으며, HS 6단위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투입된 부가가치가 4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동위원회를 통한 대상품목의 개정 또는 당사자 일방의 통지에 의한 적용 정지가 가능하며, 발효 후 5년 이후 일방적 폐기 규정은 없다.

### ③ OPZ 위원회 방식 : 한-미, 한-EU, 한-터키 FTA 적용 방식

한-미 FTA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OPZ 지정 기준에 의해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기준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역외가공지역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기준·관행, 임금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을 참고하여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요하고 있다. 한-EU 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날 회합하며, 매년 1회 혹은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OPZ의 지리적 구역 지정 및 특혜 관세 부여를 위해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부가가치 비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터키 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OPZ의 지리적 구역 지정 및 특혜 관세 부여를 위해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부가가치 비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조항 비교 〉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페루	한-인도	한-콜롬비아
적용 방식	ISI방식	OP방식	OP방식				
적용 조건	한국 선적 후 수출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 역내산재료비 45%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 역내산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미만
적용 품목	HS 6단위 4,625개	HS 10단위 134개	HS 6단위 267개	HS 6단위 100개	HS 6단위 100개	HS 6단위 106개	HS 6단위 100개
서명	05. 8. 4		05. 12. 15	06. 8. 24	11. 3. 21	09. 8. 7	12. 8. 1
발효	06. 3. 2		06. 9. 1	07. 6. 1	11. 8. 1	10. 1. 1	미발효

  

	한미 FTA	한-EU FTA	한-터키 FTA
적용 방식	OPZ 위원회 방식		
적용 조건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OPZ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OPZ 내 일반적 환경 기준, 노동 기준 · 관행, 임금관행, 영업 및 경영 관행 - 개성공단 외 다른 지역도 OPZ 선정 가능	-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의 최대 비율 설정 - 개성공단 외 다른 지역도 OPZ 선정 가능	-
서명	07. 6. 30	10. 10. 6	12. 8. 1
발효	12. 3. 15	11. 7. 1	13. 5. 1(발효예정)

자료 :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주 : 한-칠레 FTA의 경우, 개성공단 착공 이전에 서명 · 발효되어 개성공단에 대한 원산지 특례 규정이 없으나, 자유무역위원회에서 원산지 규정 변경이 가능

개성공단 국제화의 기대 효과

지난 2012년 11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연구원과 교수, 남북협력 기업 등 북한관련 전문가 104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전문가의 12.0%, 입주기업의 13.2%가 원산지 문제 및 전략물자반출 문제의 해결을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수출 금지적 성격을 지닌 초고율의 'Column 2'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WTO 가입

국가와 정상교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 : NTR) 대우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Column 1'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olumn 2'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북한과 쿠바 두 국가뿐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수출입 금지(허가제), 최혜국 대우 거부 및 일반 특례 관세 자격 부여 금지, 인도적 목적 외 원조 금지,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등의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면 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개성공단 제품이 가격 경쟁에 유리하게 되며, 특히, 개성공단의 주요 생산품인 의류, 신발, 자동차 부품 등에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 〈 미국의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

(단위 : %)

업종	HS 코드	품 목	관세율	
			Column 1	Column 2
플라스틱 제품	392610	플라스틱제 사무용품, 학용품	5.3	80.0
	392690	플라스틱제 제품	0~6.5	25.0~80.0
고무 제품	401110	승용차용 공기 타이어	3.4 / 4.0	10.0
	401120	버스, 화물차용 공기 타이어	3.4 / 4.0	10.0
가죽 제품	420212	트렁크, 슈트케이스	5.7~20.0	40.0~65.0
	420222	핸드백	5.7~17.6	40.0~90.0
의류 및 섬유류	420310	혁제 의류	4.7 / 6.0	35.0
	6106	여자용 블라우스, 셔츠	14.9~32.0	45.0~72.0
	610910	면제 T셔츠	16.5	90.0
	6205	남성용 셔츠	1.1~25.9	35.0~90.0
신 발	640299	기타 신발	3.0~48.0	35.0~84.0
완 구	950390	기타 완구	0.0	70.0

자료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13 참고.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어 미국 시장 접근이 용이해지면 북한의 저임금 우수 노동력에도 투자를 주저하던 중소기업들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대기업 및 해외기업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개성공단 1단계의 성공적인 진전뿐 아니라 2단계에 대한 수출중심기지로의 개발계획도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요르단과 이집트의 QIZ 사례 연구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미국이 요르단과 이집트에 제공한 특혜 조치인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QIZ는 관세 및 쿼터 면제 특별 구역을 의미한다. QIZ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국가에서 산업화 및 대외 개방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도입하는 수출 특화 산업단지(EPZ: Export Processing Zone)의 변형된 형태이다. EPZ는 수출대상 국가에 관계없이 세제·통관 등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QIZ는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한다.

### 미국의 對 요르단 QIZ 사례

1998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요르단 북부 도시 Irbid 내 Al-Hassa 산업단지를 세계 최초의 QIZ로 지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요르단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1985년 미국-이스라엘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을 요르단에게도 역외 적용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다. QIZ를 통한 대미 수출품은 미국 관세로부터의 면제와 함께 쿼터 제한에도 면제를 받는 특권을 향유하였으며, 요르단 QIZ의 성공은 의류제품에 대한 쿼터적용 면제특권에 기인하였다. 요르단 QIZ의 설치 배경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경제적 의존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을 공고히 하고, 요르단을 매개체로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관계 해소를 통해 중동 평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중동평화협정의 중재자로서 요르단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와 함께, 요르단을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시킴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sup>8)</sup> 관세

8) 이를 위해 미국은 1998년 QIZ 시행뿐 아니라, 1998년 EU와의 특혜협정 및 아랍 자유 무역협정 체결, 2001년 FTA 체결, 2002년 WTO 가입 등 요르단의 국제 경제 질서 편입을 측면 지원하였음. 권중현, "요르단, 대미 수출관세 및 쿼터 면제지구(QIZ) 운영 현황", 『무역통상정책』, KOTRA, 2008.

혜택의 인정 요건은 요르단 강 서안·가자지구·QIZ 지정 지역·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제조됐거나, 이들 지역에서 변형된 제품으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평가 가치<sup>9)</sup>의 최소 35%가 QIZ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혹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생산자가 각각 최소 20%의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미국의 對 이집트 QIZ 사례

2004년 12월 이집트는 미국-이스라엘과 협약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이스라엘 및 이집트 국내산 원부자재를 이집트 내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생산할 경우 미국에 무관세 및 무쿼터로 수출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초기 QIZ는 3개 지역(Great Cairo, Alexandria, Suez Canal Zone)이 지정되었으나 2005년 10월 델타(Middle Delta) 지역이 QIZ로 추가 지정되어 권역별로 총 4개 지역에 20개의 대미 무관세 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QIZ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섬유산업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게 입주해 있다. 이집트 QIZ의 설치 배경은 미국 정부가 이집트 정부가 보여준 경제개혁의 일정한 성과를 인정하면서 중동의 정치 역학 구조상 이집트의 정서를 달래주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대미 무관세 및 무쿼터 수출 총족 여건은 사업장이 QIZ 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스라엘 원부자재 비율이 11.7%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비율이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요르단과 이집트의 QIZ 사례 비교 〉

	요르단 QIZ	이집트 QIZ
지정	1998. 3	2004. 12
근거규정	1985년 미국-이스라엘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을 역외 적용	
설치 배경	중동평화협정 중재자로서 요르단에 대한 정치적 배려, 요르단을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시켜 중동 지역 정치적 안정화 도모	이집트 경제개혁의 일정한 성과 인정, 이집트를 통한 중동 지역 안정화 도모
주력 제품	섬유제품	섬유제품
운영 현황	13개(국영 4개, 민영 9개) QIZ 지정 운영 (2008년 4월 현재)	20개 QIZ 지정 운영 (2009년 5월 현재)

9) 평가가치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름.

## 시사점과 과제

FTA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체결 FT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FTA 체결시 협상 전략을 각각 수립해야 한다. 향후 FTA 체결 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가장 유리한 한-싱가포르 FTA의 ISI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체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OPZ 위원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한-EU, 한-터키 FTA에 요르단과 이집트의 QIZ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개성공단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개혁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혁 의지 표명 유도 등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진전 과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과제 역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다. 둘째, 개성공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개성공단도 요르단과 이집트의 QIZ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분쟁 해소와 긴장 완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평화적, 정치적인 역할 뿐 아니라 북한에 시장경제 교육을 시행하는 남북한 경제 교류의 산실이 되고 있다는 인식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개혁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의 개혁 조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요르단과 이집트가 개방에 적극적으로 임해 일정 성과를 보여준 것 같이 북한도 개혁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요국들과 국제기구로부터 정상적인 교역국 지위를 획득하고,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統**